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-3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2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2022. 8. 31. 만료될 예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지속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근거

-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(운영)
-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○ 필요성

- 경제적 자립 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고용 복지통합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
- 일자리 연계사업, 지역 복지사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여
-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사회의 참여활성화 기여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
라. 위탁시설 개요

위탁체	위탁기간	규모	운영사업
학교법인 이화학당 (대표:장명수)	'19.9.1~'22.8.31	대지 2,448.9㎡, 건물 6,951.06㎡	고용복지통합사업 일자리창출사업 등

위치도 (소재지:마포구 매봉산로 18)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2. 9. 1. ~ 2025. 8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<단위:천원>

연도별	사업비용	세부내역	산출근거
총사업비			
2023년	673,270	- 사무비(인건비, 운영비), 사업비, 시설비 등	- 21년 사업비 증가를 반영
2024년	721,500	- 사무비(인건비, 운영비), 사업비, 시설비 등	
2025년	773,190	- 사무비(인건비, 운영비), 사업비, 시설비 등	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
-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·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

나. 기타사항

- 추진일정안
 - 민간위탁운영체 성과평가 : 2022.4.
 - 민간위탁운영체 재위탁 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: 2022.6.
 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협약 : 2022.7. ~ 8.

<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4조(운영)

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를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9.27.>

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제21조(성과평가)

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